

의안번호	2220172
의 퇴 인	김기웅의원
회 답 일	2026. 8. 25.
추 계 번호	26C3722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 실시 (안 제37조의4제3항)	50	-	-	50	-	100	20

주: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의5 (노인의 의료기관 이용동행 지원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동행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(제1항), 이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2	안 제37조의4 (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지원) 제1항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※ (제2항)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는 냉난방·공기질·단열 등 경로당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포함됨	재량규정
3	안 제37조의4 (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지원) 제3항	보건복지부장관은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경로당 생활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7조의5 (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동행 지원)	×	○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동행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안 제27조의5제4항은 해당 사업의 대상·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, 위탁 및 비용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확대될 대상자 수 및 지원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－ 참고로, 현재 서울특별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2	안 제37조의4 (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지원) 제1항	×	○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안 제37조의4제5항은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－ 참고로,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등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함(2018년 예산 314억원)
3	안 제37조의4 (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지원) 제3항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본 추계서는 안 제37조의4제3항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-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어 추계대상에서 제외(위 ‘재정수반별 추계 여부’의 [표] 참고)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보건복지부가 2020년 실시한 “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”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“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” 용역을 실시하였으며, 5천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소요됨
 - 본 추계에서는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에 보건복지부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(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) 소요 금액인 5천만원이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추계기간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억원으로 추계

[표 2]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 실시(안 제37조의4제3항)	50	-	-	50	-	100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